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의 안
번 호 : 253

제출연월일 : 2004년 월 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자사

1. 제안사유

- 도청의 청사부지가 국유지와 도유지로 혼재되어 청사를 관리함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 청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로부터 국유지를 무상으로 양수받고자
-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재산의 취득

« 공유 충북도청 청사부지 무상양수 »

- 위 치 :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89
- 재산규모 : 대지 18,877.2m²
- 사업기간 : 2004. 11 ~ 12(2개월)
- 재산가액 : 18,292백만 원
- 사 입 비 : 불 요.

* 청사개요

연혁

- 1896. 8. 4 충주시내에 도청 청사 신설
- 1908. 6. 5 청사이전(청주시 남문로 2가 현 중앙공원)
- 1937. 6. 청사 이전(청주시 문화동 89 현 위치)

- 부 지 : 30,690.0m²(국유 18,877.2m², 도유 11,812.8m²)

3. 예산상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재산취득	재산처분	교환취득	교환처분	비고
계	1 긴				
국유 충북도청 청사부지 무상양수	비 예산				

4.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첨

5. 관계법령 : 별첨

- 지방재정법 제77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29조

공유재산 관리 계획서

2004년도 관리계획 총괄표(7-1)

(단위 : 천원)

2004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7-2)

(단위 : 전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주정가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전소유자 주소,성명	비 고
	지목	소 재 지	수 량					
계	토지	1 건	18,877.20㎡ (5,710평)	18,872,006				
	건물							
	기타							
1	토지	청주 상당 문화동 89	18,877.20㎡ (5,710평)	18,872,006	2004	청사의 효율적 관리 운영	국 가	무상양수
	건물							
	기타							
	토지							
	건물							
	기타							
	토지							
	건물							
	기타							

관 계 법령 발췌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p>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p> <p>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78조(공유재산심의회)①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p> <p>② 제1항의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① 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p> <p>② 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기타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기타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p> <p>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2억5천만원 이상(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 광역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3억원이상,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억원 이상)이 경우 예정 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로 하고, 건물 및 기타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p> <p>2. 토지에 있어서는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이상)</p>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시행규칙】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p>제37조(공유재산관리계획)①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도지사가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전까지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p>	<p>제2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①조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13호서식) 2 ~ 5호 생략</p>